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
(김희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97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14.

발 의 자 : 김희정 · 김승수 · 박준태  
서지영 · 이종배 · 김기현  
이종욱 · 김태호 · 배준영  
김도읍 · 김미애 · 조은희  
박정하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 조문은 일반 국민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범규범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표기되어야 하나, 현행법 조문에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 등이 그대로 표기되어 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.

일례로 현행법 제136조제2항은 “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”로 규정되어 있는데, ‘조지’는 ‘막힐 조(阻)’자에 ‘그칠 지(止)’자로 이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인 ‘막을 저(沮)’자에 ‘그칠 지(止)’자인 ‘저지’의 잘못된 표현으로 대표적인 일본식 한자어 표현의 잔재로 볼 수 있음.

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‘조지하거나’를 올바른 용어인 ‘저지

하거나'로 변경하여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136조).

법률 제 호

##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6조제2항 중 “阻止하거나”를 “저지하거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第136條(公務執行妨害) ① (생략)</p> <p>② 公務員에 對하여 그 職務上의 行爲를 强要 또는 <u>阻止</u>하거나 그 職을 辭退하게 할 目的으로 暴行 또는 脅迫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.</p>	<p>第136條(公務執行妨害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저지</u>하거나----- ----- ----- -----.</p>